

교수회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학칙 제48조에 의거 교수회를 구성하고 회의 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- ①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.
- ③ 교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소속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.

제3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교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4조 (심의사항)

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수업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
- ②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록 작성)

교수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회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의결된 사항의 이행)

교수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(2007.12.0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